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: 제2026-80호(2026. 9. 8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: 낚시선 매표소
3. 점용·사용의 장소: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20-64번지 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: 18m²(2026. 9. 25. ~ 2028. 9. 24.)
5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- 성 명: 이길우
 - 주 소: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385번길 50

2024. 9. 8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